

#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502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25. 4. 21.  
제안자 : 주택공간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유사 내용을 통합하여 규정하고,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정리함.

## 2. 수정의 주요내용

- 혼합단지 등에서 임대주택 임차인이 제외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체 활성화의 대상을 규정한 ‘공동주택 입주자등’을 삭제함.  
(안 제6조)
- 현행조례에 포괄하여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함. (안 제6조제5호 및 안 제6조제6호)
- 공동체 활성화의 지속성과 자율추진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및 정책 개발을 추가함. (안 제6조제1호)

#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”를 “공동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“공동체 활성화의 지속성과 자율추진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개발”로 한다.

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호를 제4호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6조(공동체 활성화) 시장은 <u>공동체</u>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공동체 활성화 지속성 확대 및 주민 자율추진 강화</p> <p>2. 커뮤니티 전문가 역할 확대</p> <p>3.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확대 운영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4. 그 밖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</p>	<p>제6조(공동체 활성화) ----- <u>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공동체</u>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공동주택단지의 주민 갈등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</u></p> <p>5. <u>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</u></p> <p>6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	<p>제6조(공동체 활성화) ----- <u>공동체</u>----- -----.</p> <p>1. <u>공동체 활성화의 지속성과 자율추진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개발</u></p> <p>2~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4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공동체 활성화의 지속성과 자율추진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개발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공동체 활성화) 시장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<u>1. 공동체 활성화 지속성 확대 및 주민 자율추진 강화</u></p> <p>2.~4. (생략)</p>	<p>제6조(공동체 활성화)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1. 공동체 활성화의 지속성과 자율추진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개발</u></p> <p>2.~4. (현행과 같음)</p>